

제296회 정례회
2010. 12. 14(화)

심 사 보 고 서

○ 충청북도 관광진흥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충 청 북 도 의 회
행정문화위원회

「충청북도 관광진흥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0. 12. 14(화)
행정문화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발 의 자 : 유완백 의원 외 7인
- 나. 발의일자 : 2010년 11월 16일
- 다. 회부일자 : 2010년 11월 19일
- 라. 상정일자 : 2010년 12월 7일

(제296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3차 행정문화위원회)

마. 주요내용

-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심사의결(원안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 : 생략)

가. 제안이유

- 지역관광 활성화 및 관광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경쟁력 제고를 위해 관광사업자의 범위를 국내 관광사업자 개념에서 국외 관광사업자를 일부 포함하는 개념으로 확대하고
- 관광여건과 행정환경의 변화에 따라 관광업무의 일부를 관련 기관·법인·단체에게 보조 및 위탁하여 민간의 행정참여를 확대시킴으로써 관광산업의 활성화에 기여하는 한편
- 행정능률의 향상과 유연성을 갖춘 체계적인 관광 정책수립과 시행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제목의 변경
 - 「충청북도 관광진흥 지원 조례」로 띄어쓰기 함
- 용어 정의의 명확화(제2조)
 - 국외여행사 정의 추가
 - 관광사업자 정의 추가
- 관광객유치 지원 범위 확대(제4조)
 - 전세기 취항시 국외 여행사 추가
 - 도 관광자원을 활용한 관광상품 개발 및 판매
- 민간위탁 근거 마련
 - 행정능률의 향상을 도모할 수 있도록 관광업무의 일부를 관광 관련 법인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제8조 및 제9조)
- 행정의 책임성과 자율성 확대
 - 서식 삭제(별지 삭제)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
 - 조례 문장에 나오는 법령 제명(이름)과 명사구 등의 띄어쓰기, 약칭의 사용 등을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에 맞도록 함.
 - 주어와 서술어, 부사어와 서술어 등의 문장 성분끼리 호응이 잘 되도록 조례 문장을 재구성함.
 - 그 밖에 일본식 표현(타, 당해 등), 어려운 용어의 정비 등

3. 검토보고 요지

(행정문화전문위원 : 장용대)

이번에 개정하는 충청북도 관광진흥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역관광 활성화와 관광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경쟁력 제고를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 관광객 유치 지원 범위 확대(제4조)를 하여 전세기 취항시 국외 여행사 추가하고, 도 관광자원을 활용한 관광상품 개발과 판매
- 관광업무의 일부를 민간위탁 근거 마련(제8조와 제9조)
- 알기 쉬운 법령 정기비준에 따른 용어 정비 등 임.

이번 개정조례는 충청북도 관광 진흥 여건을 개선하고 경쟁력 있는 관광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수립과 예산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민간의 행정참여 기회 확대와 행정능률의 향상을 도모할 수 있도록 관광 업무의 일부를 관련 법인·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등 관광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으며, 관련부서와 협의하였고, 입법예고는 제외하였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의결

7. 소수의견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9. 심사보고서 첨부서류

- 충청북도 관광진흥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충청북도 관광진흥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관광진흥 지원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충청북도 관광진흥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의 관광여건을 개선하고 관광산업을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충청북도 관광진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내국인 관광객”이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다른 시·도에 거주하는 사람(이하 “내국인”이라 한다)으로서 관광을 목적으로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내를 방문하는 관광객을 말한다.
2. “외국인 관광객”이란 외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개인(이하 “외국인”이라 한다) 또는 해외교포로서 관광을 목적으로 도내를 방문하는 관광객을 말한다.
3. “국내여행사”란 「관광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4조제1항에 따른 여행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4. “국외여행사”란 외국에서 해당국가의 허가를 받아 여행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5. “관광전세기”란 국내·국외여행사에서 외국인관광객 모객을 위해 임차하는 전세편 운항을 말한다.
6. “수학여행단체”란 국내·외 각급 학교에서 교육을 목적으로 교사의 인솔 아래 실시하는 단체 여행을 말한다.
7. “관광사업자”란 법 제2조에 따른 관광사업자를 말한다.
8. “관광사업자단체(이하 ‘사업자 단체’라 한다.)”란 법 제45조에 따라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의 설립허가를 받은 지역관광협회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관광진흥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관광객유치 지원 등) ① 도지사는 사업자단체 또는 여행사가 도의 관광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한 경우 해당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을 할 수 있다.

1. 단체 외국인 관광객을 도내에 유치한 경우
2. 국내·외(도 제외) 수학여행단체를 도내에 유치한 경우
3. 관광전세기를 도내에 취항시킨 경우
4. 도 관광자원을 활용하여 관광상품을 개발하고 홍보·판매하는 경우
5. 그 밖에 도지사가 도 관광진흥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관광객유치와 관련하여 시·군에서 재정의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군에 도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도비를 지원한 시·군에 대하여 사업추진실태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제5조(지원사항) ① 제4조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광객 유치에 도움이 되는 각종 자료 및 정보 등의 제공
2. 충청북도 관광홍보물
3.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재정적 지원조건 및 범위와 신청·지급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세부적인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6조(보조금) 도지사는 법 제76조에 따라 제2조제5호에 따른 관광사업자 또는 제2조제6호에 따른 관광사업자 단체에게 관광진흥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7조(보조금 용도) 보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광객 유치를 위한 사업
2. 외국인 의료관광 활성화 사업
3. 우수한 관광사업자의 건전한 육성을 위한 사업
4. 민간 및 외자 유치를 위한 관광프로젝트 사업
5. 도내 관광자원 운영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시설 사업
6. 그 밖에 도지사가 인정하는 관광산업 진흥과 관련된 사업

제8조(관광업무의 위탁) 도지사는 민간의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사무의 간소화로 행정능률의 향상을 도모할 수 있도록 관광업무의 일부를 관광 관련 법인이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9조(대상업무) ① 제8조에 따라 위탁할 수 있는 대상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내·외 관광객 유치 설명회 및 관광박람회 참가
2. 국내·외 관광객유치 사전답사
3. 관광기념품 공모전
4. 순환관광버스 운영
5. 문화관광해설사, 관광안내원 등 관광에 종사하는 자에 대한 교육
6. 그 밖에 관광진흥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필요한 절차와 방법 등은 「충청북도 사무의 위탁관리조례」를 준용한다.

③ 도지사는 위탁사무수행에 소요되는 비용과 그에 따르는 수수료를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감독) 도지사는 재정지원을 받은 자에 대하여 지원사업에 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검사 등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1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그 밖의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은 「충청북도 보조금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이미 시행되고 사항에 대하여는 본 조례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관 계 법 령 발 취

□ 관광진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관광사업"이란 관광객을 위하여 운송·숙박·음식·운동·오락·휴양 또는 용역을 제공하거나 그 밖에 관광에 딸린 시설을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업(業)을 말한다.
2. "관광사업자"란 관광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등록·허가 또는 지정(이하 "등록등"이라 한다)을 받거나 신고를 한 자를 말한다.
3. "기획여행"이란 여행업을 경영하는 자가 국외여행을 하려는 여행자를 위하여 여행의 목적지·일정, 여행자가 제공받을 운송 또는 숙박 등의 서비스 내용과 그 요금 등에 관한 사항을 미리 정하고 이에 참가하는 여행자를 모집하여 실시하는 여행을 말한다.
4. "회원"이란 관광사업의 시설을 일반 이용자보다 우선적으로 이용하거나 유리한 조건으로 이용하기로 해당 관광사업자(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와 약정한 자를 말한다.

제4조(등록) ①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객 이용시설업 및 국제회의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09.3.25>

② ~ ⑤ (생략)

제45조(지역별·업종별 관광협회) ①관광사업자는 지역별 또는 업종별로 그 분야의 관광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별 또는 업종별 관광협회를 설립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업종별 관광협회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설립허가를, 지역별 관광협회는 시·도지사의 설립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제76조(재정지원)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관광에 관한 사업을 하는 지방자치단체, 관광사업자 단체 또는 관광사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②지방자치단체는 그 관할 구역 안에서 관광에 관한 사업을 하는 관광사업자 단체 또는 관광사업자에게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